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3600
----------	------

2026년 4월 22일
교육위원회

I.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6년 3월 31일, 이종태 의원
2. 회부일자 : 2026년 4월 7일
3. 상정일자 : 제335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6년 4월 22일 상정, 수정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이종태 의원)

1. 제안이유

- 지난 2025년 5월 15일에 「서울특별시교육청 조례 제명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시행 2025.5.15.][서울특별시조례 제9585호, 2025.5.15., 일괄개정] 에 따라 조례 제명이 ‘시립유치원’ 에서 ‘공립유치원’ 으로 일괄 개정됨.

- 이에 자치법규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내용 중 제1조, 제2조제1항 및 부칙 제2조의 ‘서울특별시립’을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으로 개정하고, 인용 중인 상위법령 조항 등을 현행화하기 위해 발의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 개정 사항 반영(안 제1조, 제2조제1항)

나. 인용 법령 및 타 조례 명칭 현행화(안 부칙 제2조)

III.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박광선)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개정조례안은 2026년 3월 31일 이종태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3600호로 발의되어 2026년 4월 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음.
- 동 개정조례안은 자치법규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내용 중 ‘서울특별시립’을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으로 개정하고, 인용 중인 상위법령 조항 등을 현행화하기 위해 발의되었음.

2. 주요 검토의견

- 동 개정조례안 안 제1조 및 제2조제1항은 조례에서 사용 중인 ‘서

울특별시립유치원’이라는 용어를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 유치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 이는 지난 2025년 4월 30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30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교육청 조례 제명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에 따라, 시민이 조례의 소관 기관과 적용 범위를 이전보다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조례 제명에 기관명을 명확히 표시하고자 했던 개정 취지를 반영하려는 것임.
- 다만, 당시 일괄개정은 조례 제명을 중심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개별 조례 조문 내에 사용된 ‘서울특별시립’이라는 용어까지는 일괄적으로 정비되지 못했는데, 이번 개정은 기존 조례 조문에 남아 있는 ‘서울특별시립’ 용어를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으로 정비함으로써 조례 전반에 걸친 용어의 통일성과 체계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조치라 사료됨.
- 한편 동 개정조례안은 부칙 중 일부 내용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 조례와 인용 법률의 조항을 반영하여 수정하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그러나 부칙은 본칙에 부수하여 종전의 법률관계에 따른 경과적·일시적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¹⁾ 자치법규의 유효기간 연장이나 경과 조치의 적용기한 연장 등과 같이 해당 부칙이 현재까지 효력을 가지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개정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임.
- 따라서 이미 효력이 사실상 완료되었거나 특정 시점에 한정된 사항을 규정한 부칙의 경우에는 개정의 실익이 없으며, 이를 사후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과거 법률관계의 해석에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할 것임.

1) 법령안입안심사기준(2024) 제5장 부칙 규정, 610p

- 이에 동 개정조례안의 부칙안은 2016.12.29. 일괄개정 당시의 경과적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현재 시점에서 그 효력이 계속된다고 보기 어렵고, 현행 법체계와 명백히 충돌하거나 해석상 혼란을 실제로 유발한다고도 볼 수 없는 상황임.
- 오히려 이미 시행이 완료된 부칙을 사후적으로 정비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동 개정조례안에서 부칙 규정을 개정 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참고로, 서울시교육청은 동 개정조례안의 내용과 관련하여 ‘의견 없음’으로 회신하였음. (행정관리담당관-4618, 2026. 4. 13.)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V. 토론요지 : 없음.

VI. 수정안의 요지

- 부칙은 개정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삭제함.

VII.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의원 전원 찬성).

VI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IX.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3600
----------	------------

제안연월일 : 2026년 4월 22일

제안자 : 교육위원장

1. 수정이유

- 동 개정조례안 부칙은 2016.12.29. 일괄개정 당시의 경과적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해당 부칙안이 현재까지 그 효력이 계속된다고 보기 어렵고, 현행 법체계와 명백히 충돌하거나 해석상 혼란을 유발하기 어려워 개정의 실익이 없어 이를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부칙안을 삭제함.

3. 참고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의 부칙을 삭제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아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u>서울특별시립유치원의 유치원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u> 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u>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유치원</u> ----- ----- ----- -----.	제1조(목적) (원안과 같음)
제2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등) ① <u>서울특별시립유치원에 유치원운영위원회</u> (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생략)	제2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등) ① <u>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유치원</u> ----- ----- -----. ② (현행과 같음)	제2조(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원안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조례 제5436호 <u>서울특별시립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u> 부칙	<u>서울특별시조례 제5436호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u> 부칙	<삭 제>
제2조(병설된 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 「 <u>유아교육법</u> 」 제19조의3제4항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해당 유치원을 병설한 학교의 <u>학교운영위원회</u>	제2조(병설된 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 「 <u>유아교육법</u> 」 제19조의3제6항-- ----- ----- -----	<삭 제>

와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별도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서울특별시립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서울특별시립유치원”을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유치원”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립유치원”을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유치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아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u>서울특별시</u> <u>립유치원</u>의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u>서울특별시</u> <u>교육청 공립유치원</u>----- ----- -----.</p>
<p>제2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등) ① <u>서울특별</u> <u>시립유치원</u>에 유치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제2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등) ① <u>서울특별</u> <u>시교육청 공립유치원</u>----- -----.</p>
<p>② (생략)</p>	<p>② (현행과 같음)</p>